

사회복지법인 장선종합복지공동체

이 사회의 록

1. 일 시 : 2020년 05월 15일(금) 11:00

2. 장 소 : 장선복지관 1층 프로그램실

3. 참석임원 : 대표이사 조 중 형

이 사 이 병 희

이 사 허 홍 옥

이 사 김 준 호

감 사 황 원 재

4. 의 안 :

① 사업의 종류 표기 변경으로 인한 법인 정관변경

② 기본재산목록 中 용도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

③ 법인 정관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의 종류 변경

사 회 대표이사 조중형

이사 4분, 감사 1분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어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종류 표기 변경으로 인한 법인 정관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 정관 상 사업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장선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2. 자립지원시설 미네르바의 집 설치운영
3. 장선어린이집 설치운영
4. 장애아동 및 통합전문보육시설 샘터어린이집 설치 운영
5. 실버벨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6. 무지개언덕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7. 취업알선센터 설치 운영
8.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장선실버벨 방문요양, 목욕, 주간·야간보호센터)

이에 대하여 시청에서 사업의 종류 표기 방식을 관련법령으로 표기해야하고, 각 시설명을 작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2.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4.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에 따른 시설 설치 운영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6.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7.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설치 운영
8. 고령자고용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설치 운영
9.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시청 담당과에 조문 검토 요청 드리고 위와 같이 작성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사 허홍욱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이병희

제청합니다.

이사 전원

네

대표이사 조중형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업의 종류 표기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조중형

다음은 기본재산 목록 中 용도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동 3층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을 노유자시설(장선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선어린이집이 D동과 B동 3층을 사용 중이었으나, 원아 수 감소등의 이유로 D동만 사용하게 되어 B동 3층은 기존 장선종합사회복지관 소속으로 장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해야 함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준호

동의합니다.

이사 이병희

원안에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예,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조중형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본재산 목록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조중형

다음은 법인 정관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허가증의 사업의 종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허가증의 목적 사업의 종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장선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2. 자립지원시설 미네르바의 집 설치운영
3. 장선어린이집 설치운영
4. 장애아동 및 통합전문보육시설 샘터어린이집 설치 운영
5. 실버벨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6. 무지개언덕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7. 취업알선센터 설치 운영

이에 대하여 정관상 사업의 종류 조문이 변경되는 바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2.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4.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실시~~시~~에 따른 시설~~설치~~ 설치 운영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6.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7.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설치 운영
8. 고령자고용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설치 운영
9.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이사 허홍욱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준호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조중형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법인 정관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허가증의 사업의 종류

변경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심의 안건들에 대하여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매번 깊은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대표이사 조 중 형



(인)

이 사 이 병 희



(인)

이 사 허 홍 육



(인)

이 사 김 준 호



(인)

감 사 황 원 재



(인)

사회복지법인 장선종합복지공동체 대표이사 귀하